

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  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박경숙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3년 10월 24일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10월 25일

3. 제안이유

기후변화에 따른 양봉산업의 영향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와 종합 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조사와 피해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,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양봉산업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도지사의 책무(안 제1조 및 안 제3조)

나. 종합계획의 수립(안 제4조)

다. 전문인력의 양성(안 제5조)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)

가. 제안배경 및 필요성

- 최근 양봉산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꿀벌의 폐사 또는 실종 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그 피해 정도가 양봉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만큼 양봉농가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

- 이에 따라 「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)이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종합계획에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조사·연구 및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고,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
- 또한, 양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과 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- 이 조례안은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양봉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양봉산업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

#### 나.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

- 안 제1조는 목적 조항으로 ‘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 이바지함’을 명확히 하고,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‘도민건강 증진’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
-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지사의 책무와 종합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 관련 영향과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, 그 내용이 타당함
  - 안 제3조는 책무 조항으로 법 제3조<sup>8)</sup>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 파악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함

---

8)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 9. 14.>

- 안 제4조는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법 제5조<sup>9)</sup>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 및 피해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함
- 안 제5조는 법 제7조<sup>10)</sup>에 따라 도지사가 양봉산업 육성·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자구를 수정하고, 양봉산업 관련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를 마련함

#### 다. 종합의견

- (필요성 및 타당성) 이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와 종합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 영향 조사 및 피해대책을 반영하고, 전문인력 양성 지원의 정책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,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개정할 필요성이 있고, 그 내용이 타당함
- (법적합성) 상위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, 조문의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

---

9) 제5조(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)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23. 9. 14.>

1. ~ 11., 13.(생략)

12.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·연구 및 지원계획

10) 제7조(전문인력의 양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, 양봉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·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~ ⑤ (생략)